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가단177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185,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사로서 서울 강북구에서 ‘B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시 처방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의 대체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였음에

도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사후 통보를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체 의

약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 이 사건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34,185,830원에 이른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부당 청구금액 34,185,830원에 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16. 6. 23.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16. 6. 28.부터 2016. 10. 24.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738호로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2. 관련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사대상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처분사유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데 처분의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고, 재량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 않아 재량행위인 관련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4060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7.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부당 청구금액의 명목으로 34,185,830원을 환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환수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존재한다. 즉, 어떠한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으로서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통해 관련 처분이 취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처분사유 중 일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관련 처분과 사실관계는 공통되더라도 피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의

별개 조문에 근거하여 한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비록 관련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그와 별개의 처분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고 그 하자의 정도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은 이상, 비록 민사법원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에게 반환을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관련 처분을 취소하면서 법원이 판시한 사유는 처분사유 중 일부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서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정도에 이르렀음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구체적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